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0호 2021. 11. 3.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1-14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1-1288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 (변경)(안) 공람 · 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21-1291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5
- 정선군 공고 제2021-1297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3

- 정선군 공고 제2021-1298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9
- 정선군 공고 제2021-1305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28
- 정선군 공고 제2021-1307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1-140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증축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869-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증축
 - 나. 명 칭: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증축공사(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공공·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29,900㎡	<input type="checkbox"/> 증축내용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A=831.79㎡ (부지면적 9,947㎡)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정선군수(복지과)
-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3.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편입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소유권 외의 종류 및 내용
계		8필지		12,282	9,947			-	-	-
1	정선읍 신월리	900	대	2,912	2,912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정선읍 신월리	869-1	대	3,739	3,739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정선읍 신월리	869-2	전	283	28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정선읍 신월리	869-3	답	608	50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정선읍 신월리	896-1	답	1,140	48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정선읍 신월리	896-3	전	1,368	39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정선읍 신월리	896-4	답	1,415	1,41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정선읍 신월리	899-2	전	817	22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1-1288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남면 무릉리 일원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가.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변경)(안)
-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남면 무릉리 일원
- 다. 면 적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별도기재
- 라. 주요결정내용 : 지구단위구역 내 도로 변경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주차장 변경, 남면(증산) 주차장 신규 결정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3. 공람장소 및 기간

- 가.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남면 행정복지센터
- 나. 공람기간 : 2021. 10. 29 ~ 2021. 11. 15(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

4.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 공람장소 비치

5.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결정(변경)(안) 도면 : 공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행정복지센터(사북읍, 남면)로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와 행정복지센터(사북읍, 남면)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1-1291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부터 안 제2조까지)
- 케이블카 운행구간, 승차기준, 운행시간(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케이블카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케이블카시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안 제13부터 안 제17조까지)
- 케이블카시설의 위탁·임대에 관한 사항(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케이블카 예산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054
- 팩스: 033-560-2593
- 이메일: kms482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케이블카”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케이블카시설”이란 케이블카, 대피소, 데크로드, 가리왕산 역사관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케이블카 시설물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리왕산 케이블카시설의 운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가리왕산에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한다.

제4조(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승차인원) 케이블카 1대당 승차정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승객
 - 가. 만 12세 초과인 경우: 1명
 - 나. 만 12세 이하인 경우: 0.5명
2. 화물: 무게 65킬로그램마다 1명

제6조(운행시간 등)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행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케이블카 이용자의 수가 급변하는 경우

- 3. 기상악화 등으로 운행의 단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케이블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휴일) ① 케이블카시설의 정기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정기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2.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 운행이 어려운 경우
- 3. 그 밖에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케이블카 이용료는 자체심의를 거쳐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원
-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관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무료탑승권의 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카 무료탑승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무료탑승권의 발행 총수는 전년도 유료탑승객 수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 1. 케이블카 이용 홍보에 필요한 경우
-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무료탑승권 발행 및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할인) ① 군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고시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이용료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1. 정선군민
- 2.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 5. 65세 이상인 사람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1. 사고위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경우
- 2.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사정이 아닌 사유로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군수는 운행구간의 역마다 케이블카 시설의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케이블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케이블카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
-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 5.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5. 장애인 안내견 외에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 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6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게시사항)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4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이용약관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케이블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케이블카 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케이블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단체 등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군수는 케이블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케이블카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3. 가리왕산 케이블카 관리·운영

[별표 1]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구간(제3조 관련)

운행구분	기점	경유	종점
왕복	숙암역	가리왕산역	숙암역

정선군 공고 제2021-1297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2020년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신규 개소 및 「정선청소년문화의집」 폐지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 필요
- 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명칭(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과 [별표1] 의 명칭(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이 불일치한 관계로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별표1] 의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 수정
 - 당초: 정선청소년문화의집,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 변경: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 나. [별표1] 의 정선군 청소년시설 위치 수정
 - 당초: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 변경: 정선군 정선읍 용담샅길 15

3. 일부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 2021. 10. 30. - 2021. 11. 1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연락처: 전화(033-560-2317), 팩스(033-560-2141)
- 주 소: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시설명란의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집”을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를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로, 위치란의 “애산로 25”를 “용담셋길 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 청소년시설 명칭·기능·위치(제2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정선읍 용담샛길 15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관리·운영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27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생활체육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담 및 지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CYS-Net)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12-6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8

관련법령 발췌분

▣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제2조(청소년시설) 정선군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0.20.>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0.20.>

정선군 공고 제2021-1298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21년 1월 1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 및 현 규칙의 내용 중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여 규칙의 실효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규칙 원문의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오류 수정
 나. [별표] 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적용기준 수정
 다.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수정

3. 일부개정 규칙안: 별첨

4. 입법예고: 2021. 10. 30. ~ 2021. 11. 1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 연락처: 전화(033-560-2317), 팩스(033-560-2141)

- 주 소: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으로, “접수대장과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접수대장을 제6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u>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과 <u>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 <u>제6조제1항에 따른</u> ----- ----- ----- <u>접수대장을</u> <u>제6조제3항에 따라</u> ----- ----- -----.</p>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 징 금 액	감 경 기 준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1/2 감경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일 때 1/2 감경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위험·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1/2 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된 경우 1/2 감경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경우 1/2 감경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18세 이상의 자를 호객·접객·윤락행위가 아닌 단순 고용한 행위 1/2 감경 (※ 단순고용이란 업소에서 주방, 청소, 경리, 서빙, 노래방에서의 시간당 근무를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업주의 연령확인 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 제시, 허위신분증제시 등 나이를 속여 거짓으로 알려주어 위반한 경우 1/2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유인 인원이 10인 미만일때 1/2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1/2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 경 처 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주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향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발췌분

■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3. 2., 2020. 3. 24.>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과 지원
3. 민간의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신설 2016. 7. 19., 2020. 12. 29.>

정선군 공고 제2021-1305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일

정 선 군 수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개요

- 가. 명 칭: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 나. 위 치: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 160-18
- 다. 면 적: (당초) 58,784㎡ → (변경) 56,500㎡
- 라.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
- 마. 사업시행자: (주)반디개발
- 바. 사 업 비: 10,865백만원(기투자 9,615백만원)
- 사. 사업내용: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번지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여 탄광지역의 주거환경과 고원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급속한 폐광으로 인한 탄광지역을 재생시키며, 대상지와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민열람 일시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2021. 11. 03 ~ 2021. 11. 18. (공고일로부터 15일)
- 나. 열람장소: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350)
- 다. 제출방법: 이메일(jeuis7@korea.kr) 및 팩스(033-560-2594)

의 건 서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서식으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jeuis7@korea.kr) 및 팩스(033-560-2594)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 건 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의견내용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1-1307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현행 「정선군 건축 조례」 상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개정 및 정부 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차별규제 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준 구체화 (안 제7조)
 -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중 최근 많이 건축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주택법」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제1항제3호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
 -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정선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을 통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세부사항을 정함
-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의 현실화 (안 제8조)
 - 건축위원회 구성원을 ‘25명 이상 15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지역 여건 및 현실적 상황에 맞는 수치로 수정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 기준 명시 (안 제17조)
 - 「건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제외 대상 기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단서 신설로 예치금 제외에 대한 혼란 방지

○ 자치법규의 차별규제의 개선 (안 제23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대행자 선정 절차를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른 공개모집 및 공정한 선정방식으로 개정하여 규제 개선 및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 근거 법령 수정 (안 제25조)

-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 제25조의 상위법령을 “「건축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로 근거 법령 수정

○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를 위한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2)

- 「건축법」 제52조의2는 사용자 안전을 위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 취지에 맞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 건축의 적정성 검사 의무 규정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안전 보장이 필요에 따른 신설

○ 대지 안의 조경기준의 명확화 (안 제28조)

- 「건축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으로 명확화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에 대한 명시 (안 제38조)

- 「건축법」 제80조제5항의 단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는 규정 삭제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1. 11. 03. ~ 2021. 11. 13.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474),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를 “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제1항 중 “15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군 내에 사무소를 소재한”을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모집된 명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영 제20조제

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항자 지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

제23조제3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2항제4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 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 는 1년에 1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가. ~ 마. (생략)</p> <p>바. <u>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u></p> <p>3.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u>」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p> <p>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u>16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u></p> <p>5.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7조(기능)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u>관광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u></p> <p><u><삭제></u></p> <p>4.-----</p> <p>-----</p> <p><u>1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u> -----</p> <p>-----.</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u>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u></p>

<신 설>

<신 설>

회 심의를 생략한다.

④ 강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⑤ 위원회 심의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제8조(구성) ① -----
----- 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2. ~ 5. (생략)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하고 군 내에 사무소를 소재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

-----.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업무

2. ~ 5. (현행과 같음)

③ -----

-----.

1. -----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공개 모집된 명부의 -----
-----.

2. -----

----- 하며,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목에서

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3. ~ 6. (생략)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신 설>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나. 제2항제4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 6.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6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한다.

③ 기존수목(원시림을 포함한다)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2배까지 인정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7조에 따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 는 1년에 1회로 한다.